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조례 제2165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65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를 “해당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대 5회까지, 10년 이상이면”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제18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2. 시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6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시장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별표 4의 “일반”을 “일반직”으로 하고, “호봉 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획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5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 ~ ②(생 략)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1일에 사용한 육아시간이 2시간 미만이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 ②(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⑥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⑥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대 5회까지, 10년 이상이면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삭 제>
⑩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⑩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2. 시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
⑪ <신 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6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신 설>	⑫ 시장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3. 12. 29.>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4] <개정 2023. 12. 29.>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획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관련)
<table><tr><th>구 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사 망</td><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일</td></tr></table></td><td>[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관련)
<table><tr><th>구 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사 망</td><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3일</td></tr></table></td></tr>
</table>